|  |
| --- |
|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특약** |

**제 1 조 적용범위**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거래에는 **이 특약**외에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관련약관**을 적용한다.

**제 2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계정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한다.

**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사업자**이다.

**제 4 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금액 100원이상**으로 하며 **최고금액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6 조 재예치**

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한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는다.

**제 7 조 이율 및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일 현재 고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한다. 다만, 이율결정일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응당일로 한다.

**제 8 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한다.

**제 9 조 거래방식**

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관리시스템에 의해 신규, 지급, 해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단말거래나 인터넷거래는 불가능**하다.

**제 10 조 중도해지**

①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 할 때에는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은행계정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만기일 전 지급청구 할 때에는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단, 제2항 제9호, 제10호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1.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라.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9.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10.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6개월 미만: 3개월제 이율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제 이율

1년 이상 2년 미만: 1년제 이율

2년 이상 3년 미만: 2년제 이율

**제 11 조 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 해지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한다.

**제 12 조 기 타**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하나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한다.